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2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2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쓰레기 종량제 환경부 지침 개정사항 및 종량제봉투 종류, 수수료 감면대상 기준 한정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규정 삭제(안 제19조 제1항 및 제2항)
- 나.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한정(안 제35조 제1항 제1호)
- 다. 제작·유통되지 않는 종량제봉투 가격 규정 삭제(별표4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3. 10. 26. ~ 2023. 11. 15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해당 없음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- 5)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수정의결(2024. 2. 7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단서 중 “일반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으로, 음식물류폐기물봉투”를 “음식물류폐기물봉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되, 가정”을 “가정”으로, 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담고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”를 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는다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수급권자

별표 4는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규격봉투의 종류 등)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·재사용종량제봉투·음식물류폐기물봉투·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. 다만, <u>일반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으로, 음식물류폐기물봉투는 일반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한다.</u></p> <p>② <u>일반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되,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담고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.</u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35조(수수료의 감면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에 따른 <u>수급권자</u></p>	<p>제19조(규격봉투의 종류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음식물류폐기물봉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가정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업장생활계폐기물</u> ----- ----- <u>를 담는다.</u>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5조(수수료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 제7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</p>

2. ~ 4. (생 략)

② (생 략)

[별표 4]

(종량제봉투의 가격)

(단위 : 원)

구분	생활폐기물용		사 업 장 생활계폐기물용	
	2016년 까지	2017년 부터	2016년 까지	2017년 부터
5 ℓ	120	130	-	-
10 ℓ	220	250	-	-
20 ℓ	440	490	-	-
30 ℓ	660	740	1,080	1,200
50 ℓ	1,100	1,250	1,800	2,000
75 ℓ	1,650	1,880	2,700	3,000
100 ℓ	2,220	2,500	3,600	4,000

(특수규격봉투 가격)

(단위 : 원)

구분	2016년까지	2017년부터
20 ℓ	-	2,040
50 ℓ	4,600	5,100

계 · 의료 수급권자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(종량제봉투의 가격)

(단위 : 원)

구분	생활폐기물용
5 ℓ	130
10 ℓ	250
20 ℓ	490
30 ℓ	740
50 ℓ	1,250
75 ℓ	1,880

(특수규격봉투 가격)

(단위 : 원)

구분	특수규격봉투
20 ℓ	2,040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 : 도시환경국 깨끗한마포과 이지선 (☎ 3153-9226)